

2026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건축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함 】

○ 기 간: 2026. 7. 8. [수] 09:00 ~ 7. 15. [수] 18:00까지

○ 방 법: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xam.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응시수수료(12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 처리비용)이 소요
1)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
2)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접수취소 및 반환 신청자,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붙임] 안내를 참조하여 접수 기간 내 신청 가능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별도 시험실 배정 및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를 선택하여 접수한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이메일(kiraexam@kira.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유선(02-3415-6871~5)으로 수신 여부 확인 ☞ 세부 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 응시자격

○ 건축사 자격시험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3821호>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에 따라 금회까지 응시 가능>

(1)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3. 시험일자
및 장소

○ 시험일자: 2026. 9. 12. [토]

○ 시험장소: 2026. 8. 21.(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 안 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교 시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100점	100점
시험시간	09:00 ~ 12:00 (3시간)	13:00 ~ 16:00 (3시간)	16:30 ~ 19:30 (3시간)
출제범위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 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 평면설계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답 안 지 작성방법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5.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 합격예정자 발표: 2026. 11. 6.(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2026. 11. 11.(수) ~ 11. 13.(금) 18: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29.(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6. 응 시 자
지 참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둘 다 지참 <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도용품: 최대 가로650mm × 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 규격 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7.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답안작성 트레이싱지(교시마다 1인당 2매) 및 깔판용지(1인당 1매)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소지 및 무단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초기화(RESET)한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응시원서 및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 오기입,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반환 및 감면 근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2. 응시수수료 반환

(1)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접수 취소일	반환율	반환시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반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2)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 유	반환율	입증서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입·퇴원확인서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격리 사실확인서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경찰서, 관공서 등의 확인서

가) 신청 기간: 시험일 이후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 후 반환 불가)

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입증서류

다) 제출 방법: 대한건축사협회에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정부24 등) 발급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kiraexam@kira.or.kr) 제출 가능

3.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	감면율	입증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가) 신청 기간: 원서접수 기간 내(신청기간 종료 후 감면 불가)

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입증서류

다) 제출 방법: 대한건축사협회에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정부24 등) 발급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kiraexam@kira.or.kr) 제출 가능

라) 감면 방법: 응시수수료 전액을 선납하면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처리

※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